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0. 10.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 10. 29.

경기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자: 박재형 의원 등 7명(박종길, 안영란, 김인호, 안대국, 박정환, 서민우)
- 발의일자: 2020. 10. 13.
- 회부일자: 2020. 10. 16.
- 검토기간: 2020. 10. 19. ~ 10. 23.(5일간)

2. 개정이유

-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 시범학교와 시범학교가 아닌 곳의 차별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 자전거안전모 착용을 책무화 하여 교통안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전거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로 신설 (안 제3조부터 제4조)
-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된 학교를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학교로 지정으로 개정(안 제14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관련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0. 10. 13. ~ 2020. 10. 2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안전모, 시범학교 지정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문화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 의견중 안 제3조제7호 “자전거안전모 착용 유도에 관한 사항”은 현행조례 제3조제6호에서, 안 제4조제2항제5호의 “자전거안전모를 착용할 책무”는 현행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서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14조제3항의 시범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수정 의견

- 자전거이용시 안전모 착용은 책무화되어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로 마련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를 할 수 있으며,
- 개정안 제3조제6호 및 제4조제3호 안전모 착용 사항은 조례 제3조제6호 자전거안전이용 윤리에 관한 사항과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신설은 중복·유사하므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함
- 개정안 제14조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만 지정이 가능하고 자전거 통학은 중학교 이상에서 가능하므로 해당조례를 초등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현재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별 신청으로 자전거이용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자전거보관대, 태양광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조례상의 내용이 차별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조례로 존치함이 타당함.

○ 수정내용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1. ~ 6. (생략) 7. <u>자전거안전모 착용 유도에 관한 사항</u>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1. ~ 5. (현행과 같음) 6. <u>자전거 이용시 자전거안전모 착용 등 안전윤리에 관한 사항</u>	○ 안전모 착용 사항은 제6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함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② 생략 1. ~ 4. (생략) 5. <u>자전거안전모를 착용할 책무</u>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② 생략 1. 2. 4. (현행과 같음) 3. <u>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자전거안전모 착용 등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u>	○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제3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함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 운영) ① · ② (생략) ③ <u>구청장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u>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은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u> 〈현행 조례존치〉	○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만 지정이 가능하고 자전거 통학은 중학교 이상에서 시행하므로 해당조례를 초등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 현재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별 신청으로 자전거이용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자전거보관대 · 태양광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조례상의 내용이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조례로 존치함이 타당할 것임.

【 관련 법령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현행 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

1. “자전거이용시설” 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민자전거”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공용대여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자전거안전이용 윤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 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4. 보행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과속운전 금지 등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제5조(자전거 소매업자의 책무) ① 자전거 소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전거 소매업자”라 한다)는 구가 실시하는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소매업자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자전거의 안전이용 방법 및 자전거의 정기적인 점검·정비에 관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17. 12. 29)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의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공서, 공원, 하천 등 필요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영 별표에 따른다.

④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 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 · 보관)** ①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18. 9. 21.)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 · 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 · 보관 ·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2조(구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 및 우리 구 방문자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로 하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자전거정비소 · 대여소 설치 ·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의 장소 및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 ·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관대 · 태양광공기주입기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③ 구청장은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5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 등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1.)
- 제16조(자전거도난예방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관내 자전거의 등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구 자전거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전거도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가입)** 자전거 이용 구민은 자전거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자전거의 날 행사 등)** 구청장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 또는 자전거의 날을 전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29)